

예술공간 오르다 대관 규약



서울연극협회
THE SEOUL THEATER ASSOCIAT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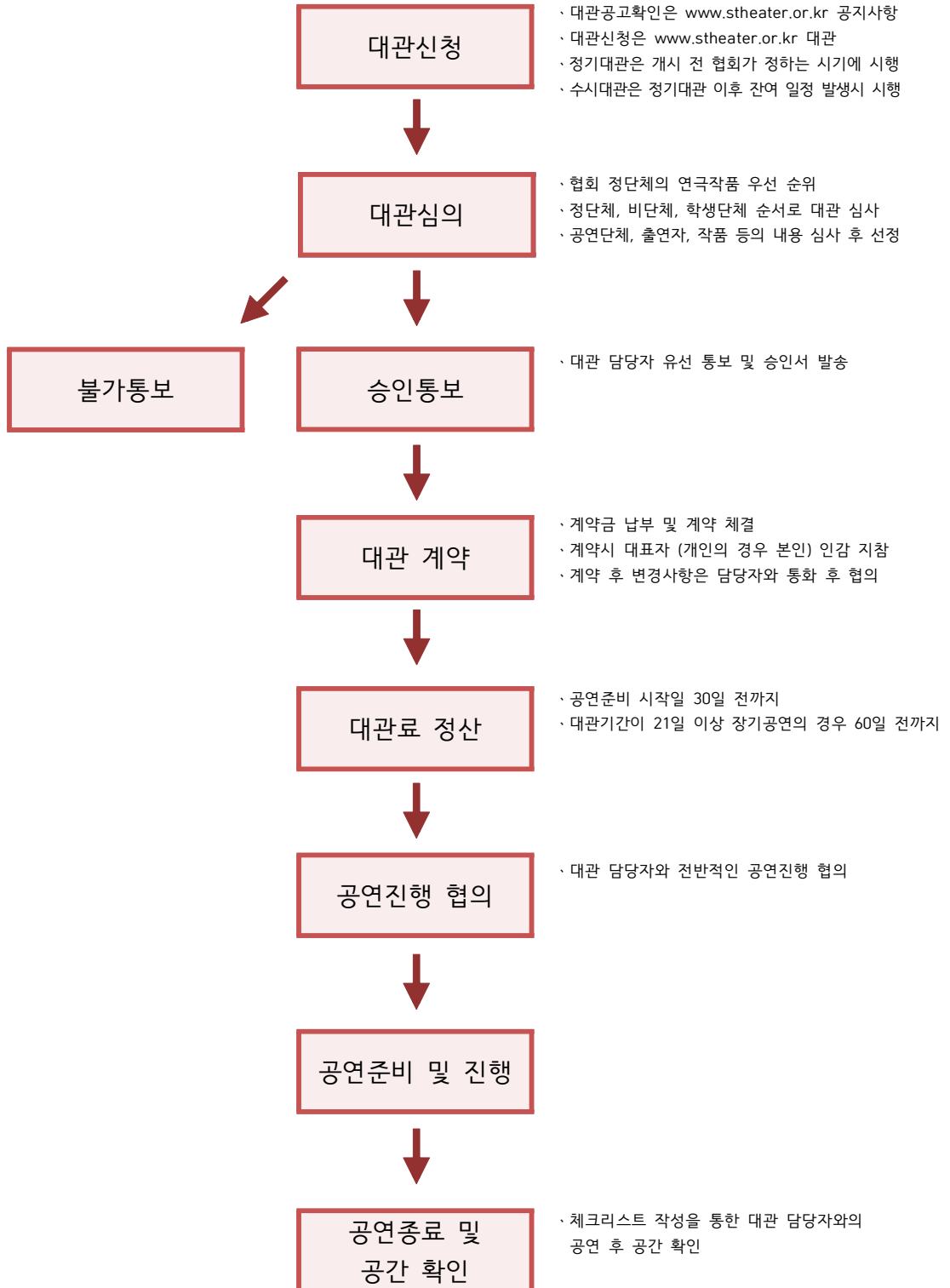
차례

I 대관업무 절차	3p
II 대관규약 총칙	4p
III 대관료	5p
IV 대관신청 및 승인	5p
V 대관승인 취소, 내용변경 금지, 공연취소 및 계약해제	6p
VI 회원제 인정 및 유보석	7p
VII 공연장 사용 및 관리 준수 사항	7p
VIII 기타	9p

★ 유의사항 ★

- ▷ 제 5조 (대관료)
- ▷ 제12조 (회원제 인정 및 유보석)
- ▷ 제15조 (관리의무 및 공연진행 준수사항)

I 대관업무 절차



Ⅱ 대관규약 총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약은 서울연극협회(이하'서협'이라고 한다) 예술공간 오르다(이하'공연장'이라 한다) 대관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, 서협과 대관자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규약을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연장운영과 문화예술창달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.

제 2 조 (대관의 정의)

대관이라 함은 공연, 연습, 녹음,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, 설비 및 부수 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통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
제 3 조 (대관의 종류)

- ①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고 정기대관은 차기년도 공연일정에 관한대관으로 매년 차기년도 개시 전 서협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, 승인, 계약체결 등의 절차를통해 이루어진다.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공연 취소 등으로 인하여 잔여일정 발생시 수시로 이루어지는 대관을 말한다.
- ② 원활한 공연장운영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기년도 이후의 대관도 가능하다.
- ③ 대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공연대관과 공연준비대관, 연습대관, 철수대관과 공연 목적 이외의 방송,영화, CF, 음반제작을 위한 기타대관으로 구분한다. 단, 영화, 드라마 등 상업적 목적이 분명한 공연물종에서 공연자 및 대관주최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국내 공연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 협의에 따른다.

제 4 조 (대관자의 정의)

대관자란 정기 및 수시대관을 통하여 서협과 대관 계약을 체결한 주최자(기획사 또는 개인)를 말한다.

Ⅲ 대관료

제 5 조 (대관료)

- ① 대관료는 매년 공연장 유지 및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서협 회장이 정한다.
 - 가. 대관료란 공연을 위하여 무대 및 공연장의 기본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, 공연준비대관과 공연대관, 추가대관, 철수대관으로 구분한다.
- ② 대관자는 대관계약 체결시 기본대관료의 30%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며, 잔금은 공연준비대관일 30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. 단, 대관기간이 21일이상 장기 공연의 경우, 공연준비대관일 60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.
- ③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조치 한다.
 - 가. 공연장 구내에서 발생한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(납부액의 100%)
 - 나. 서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(납부액의 100%)
 - 다.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연준비대관일로부터 90일 이전에 대관취소를 신청하여 서협의 승인을 얻은 경우 (납부액의 50%환급 조치)

Ⅳ 대관신청 및 승인

제 6 조 (대관신청)

- ① 대관하고자 하는 자(이하'신청인'이라고 한다)는 서협 홈페이지 www.stheater.or.kr 에서 대관공지 및 접수 일정을 확인하고, 제공된 서식으로 서협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.
- ② 대관계약 후 추가되는 일정 및 연습실 대관신청 등은 소정의 양식으로 같음하며, 신청양식은 서협홈페이지 (대관/ 대관신청서양식/ 서협연습실)에서 다운 받아 대관 담당자에게 송부한다.
- ③ 서협은 다음과 같은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.
 - 가.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 - 나. 서협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서협의 관리 유시 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 - 다. 아래 8조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 중인 사람의 신청
 - 라.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과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 행사
 - 마. 아마추어 공연단체 또는 개인
 - 바. 초.중.고.대학생 개인 및 단체 (단, 개인이라 할지라도 수상경력 등 일정 수 이상의 특별한 소질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)
 - 사.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

제 7 조 (대관승인)

- ① 서협은 대관신청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, 유선으로 통보할 수도 있다.
- ② 대관승인을 받은 자(이하 '대관자'라고 한다)는 「대관승인 통지서」에 명시된 일자까지 서협과 계약을 체결한다. 서협 방문 및 계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서협은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조정 등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협의하여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.

V 대관승인 취소, 내용변경 금지, 공연취소 및 계약해제

제 8 조 (대관 승인 취소 및 신청자격 중지)

다음과 같은 경우 서협은 대관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. 또한, 서협은 그 행위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상 대관 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
- ① 대관승인 후 대관 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
- ② 서협이 지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 계약금 또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
- ③ 기타 서협 사업에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
- ④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
- ⑤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
- ⑥ 이 규약을 위반한 경우

제 9 조 (내용 및 일정변경)

- ① 대관자는 대관 승인시 명시된 공연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.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로 세부사항(공연 명칭, 세부 일정 등)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서협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② 공연장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해 공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관료는 반환되지 않는다.

제 10 조 (대관 취소)

- ① 대관자는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공연 준비 시작 90일 내에 서면으로 이를 신청하고 서협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대관이 취소된 경우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제 5조 3항에 의하여 처리되며, 귀책사유인 경우 차후 대관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.

제 11 조 (공연 취소 및 중지)

- ① 대관자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, 대관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, 기타 입장권구매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- ② 대관이 취소된 경우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제5조 3항에 의거 처리된다.
- ③ 천재지변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, 서협은 대관자에게 취소된 공연회차에 해당하는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고 대관자는 입장권의 교환 및 환불, 기타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외에 상호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.

Ⅵ 회원제 인정 및 유보석**제 12 조 (회원제 인정 및 유보석)**

- ① 대관자는 서협 회원 제도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.
- ② 서협은 공연의 홍보를 위해 대관자와 협의하여 회당 최소 3석 이상의 좌석을 유보할 수 있다. (단, 1일 3장의 초대권으로 대처할 수 있다.)

Ⅶ 공연장 사용 및 관리 준수 사항**제 13 조 (홍보물 협의)**

- ①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, 홍보물 제작 시 서협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.
- ② 대관자는 홍보용 포스터 및 극장 내 부착되는 사인물에 서협이 제공하는 규격을 따라야 하고, 홍보물 부착시 서협이 지정한 규격의 홍보물을 내, 외벽에 부착할 수 있으며 대관기간 내로 한정한다.
- ③ 대관자는 서협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 포스터 등의 홍보물을 부착·설치할 수 없다.

제 14 조 (관리의무 및 공연진행 준수사항)

-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서협의 기본시설, 부대설비와 관련 요구하는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.
- ② 대관자는 '공연장'의 대관 사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, 대관 신청한 공연의 종류나 내용을 변경하여 공연 또는 사용할 수 없다.
- ③ 대관자는 '공연장'의 대관 사용에 있어 특별한 설비를 필요로 할 경우 서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대관자의 부담으로 한다.
- ④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공연장(공연장 내,외)에서 발생하는 사고, 인명피해 (관객, 공연관계자 모두 포함), 화재, 물질적 손실 등 민, 형사상의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진다.
※(추천사항) 대관기간 중 “행사종합보험”에 가입할 경우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. 문의 (농협) 010-3703-1094 담당자 배상범
※대관기간 중 또는 후, 조명기 램프의 이상유무가 있을시 교체 비용은 대관자가 납부한 보증금에서 제한다.
- ⑤ 대관 계약 후 대관자는 서협측 대관 담당자와 공연 1주일 전까지 공연장 점검을 거쳐야 하며, 서협이 요구하는 진행일정에 협조할 의무를 갖는다.
- ⑥ 공연 종료 후 시설 철거 시 발생하는 환경 정리 비용은 대관자(보증금)가 부담해야 한다.
- ⑦ 공연 매표, 수표 진행요원은 대관자 측에서 진행한다.
- ⑧ 대관자는 서협 정회원에게 10,000원, 원로회원에게 무료로 공연 관람을 제공한다.
- ⑨ 대관자는 예술공간 오르다에 속한 화장실, 로비, 매표소 등의 기타시설물에 대해 청소, 관리 및 쓰레기 등 오물 처리를 책임진다.

제 15 조 (입장 제한)

서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대관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- ①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
- ②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
- ③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- ④ 취학 전 아동(만 6세)은 공연장 내에 출입을 금지한다. 단 공연의 성격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.

Ⅷ 기타

제 16 조 (규약의 효력)

본 규약은 서협과 대관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.

제 17 조 (항변권)

- ① 대관자는 서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, 공연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항변할 수 있다.
- ② 서협은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서협은 그에 따른 배상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 18 조 (규약변경 승인 등)

- ① 이 규약을 변경할 경우 서협은 대관자에게 변경규약의 시행 1개월 이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. 대관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, 통지서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협에 서면접수 해야 한다. 만약 대관자가 위 기한 내에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② 제 1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.

제 19 조 (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)

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서협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.

제 20 조 (관할법원)

규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, 서협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.

제 21 조 (규약위반시의 책임)

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,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.

제 22 조 (적용시기)

본 규약은 2017년도 1월 1일 이후 공연을 위한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.

상기 내용을 숙지하였으며
2017 예술공간 오르다 규약 내용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.

2017년 월 일

서울연극협회
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2길, 92 한양빌딩 3층
사업자등록번호 : 101-82-63003
회장 송형종 (인)

사업자등록번호 :
대표자 (인)



서울연극협회
THE SEOUL THEATER ASSOCIATION

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2길, 92 한양빌딩 3층

<http://www.stheater.or.kr>

종합안내 02-765-7500

대관안내 070-4820-3670